

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설립 연월일	전화번호
	주소	
	사무소 소재지	

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